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7. 11. 6 .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수정이유

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, 위원회의 원활한 갈등예방과 조정을 위해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이해관계자에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함.

수정주요내용

-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.
(안 제5조 제2항)
 - 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책관리실장 ⇒ 위원중에서 호선함.
-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정책관리실장을 추가함.(안 제5조 제3항)
- 이해관계자에게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9조 제1항)
 - 관계기관·단체 ⇒ 관계기관·단체·이해관계자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 후단 “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.”를 “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중 “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, 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중 “관계기관·단체”를 “관계기관·단체·이해관계자”로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 5조(구성) ①위원회는----- -----.</p> <p>②-----, 부위원장은 <u>정책관리실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③----- <u>자치행정국장</u> ----- -----.</p>	<p>제 5조(구성) ①위원회는----- -----.</p> <p>②-----, 부위원장은 <u>위원중에서 호선</u>한다.</p> <p>③-----<u>정책관리실장, 자치행정국장,</u>-- -----.</p>
<p>제 9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①위원회는 ----- -----<u>관계기관·단체</u>----- ----- --.</p>	<p>제 9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①위원회는 ----- -----<u>관계기관·단체·이해관계자</u>----- ----- --.</p>